

「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3. . .

제출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구미문화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.

⇒ ② 정관의 제·개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⇒ ③ 시장은 매년 사업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「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구미문화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⇒ ② 정관의 제·개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⇒ ③ 시장은 매년 사업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6조(정관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조(정관) ① (원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<u>② 정관의 제·개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u>
제17조(보고·검사 및 감사) ①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7조(보고·검사 및 감사) ①· ② (원안과 같음) <u>③ 시장은 매년 사업결과를 의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

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구미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구미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설립) 재단은 「민법」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, 추진 및 지원
2. 문화예술의 창작 및 교육 활동 지원
3.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4.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
5.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
6.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·교류에 관한 업무
7.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·운영 관리
8.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·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 시는 재단의 설립,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6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1. 목적과 명칭
2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3. 자산,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4. 이사·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
5. 임직원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의 운영
7. 사업에 관한 사항
8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9.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정관의 제·개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7조(임원) 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

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되,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③ 대표이사·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.

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·사무를 맡아 처리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9조(이사회 구성 및 운영)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,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,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.

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직원)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

제11조(운영재원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2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사업연도)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4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·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재단은 세입·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(결산서의 제출)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)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재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

제17조(보고·검사 및 감사)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·검사·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매년 사업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8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산의 경과조치)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준비) 시장이 한 재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재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.